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절차

제정	1988.	2.	29.	이사결재	국증	1011-136
개정	1992.	10.	17.	부장결재	국증	8011-697
	1994.	4.	25.	부장결재	국증	8011-315
	1995.	5.	22.	부장결재	국증	8530-238
	1996.	9.	23.	부장결재	국증	8011-732
	2003.	4.	29.	실장결재	금증	8011-286
	2007.	5.	3.	실장결재	증권팀	- 596
	2023.	3.	8.	실장결재	증권팀	- 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한국은행의 정부유가증권 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유가증권 사무 취급에 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절차에서 “취급점”이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이하 “금융업무실”이라 한다), 지역본부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통할점”이란 금융업무실 및 지역본부를, “본부”란 금융업무실을 말한다.

제4조(정부유가증권 취급 약정 등) ① 「국고금취급규정」 제2조에 따른 국고수납대리점이 정부유가증권 사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 약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한국은행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약정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의 국고수납대리점이 신규로 정부유가증권사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통할점에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유가증권 사무를 취급하는 국고수납대리점이 사무취급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통할점에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 종료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할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국고수납대리점에 다른 뜻을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제5조(증권의 수탁) ① 취급점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취급규칙」 제6조에 따른 유가증권을 첨부한 정부소유유가증권 기탁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입절차를 이행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이하 “수탁증서(1)”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수탁증서(1)에는 정부유가증권 접수정리부<장부 제3호 서식>에 따라 건별로 수탁번호를 기입하고 그 번호를 기탁서에 부기한다.

제6조(증권의 환부)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취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환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환부 절차를 이행한 후 유가증권을 교부한다.

제7조(부속이표의 교부)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취급규칙」 제8조에 따른 정부소유유가증권 이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가증권건별장(이하 “건별장”이라 한다) 교부표시를 한 후 해당 이표를 교부한다.

제8조(원리금지급기일 통지) ① 취급점은 보관 중인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개시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상환기일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정부유가증권 이자지급기일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취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금상환 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환부의 청구가 없어 이를 「취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할점을 거쳐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본부는 취급점으로부터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이관할 취급공무원에 대한 지시를 받아 취급점에 통보한다.

④ 취급점이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할 때에는 정부유가증권 이관통지서(이하 “이관통지서”라 한다) 원부에 따라 환부절차와 지정된 취급공무원 계좌로의 수입절차를 이행한 후 신 취급공무원에게 이관통지서와 수탁증서를, 구 취급공무원에게는 이관통지서 사본을 각각 송부한 후 신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 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이관통지서 원부에 첨부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지정된 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이 타점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한다.

1. 구 취급점은 이관통지서 원부에 따라 환부절차를 이행하고 정부유가증권 송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점간 증권수급장<장부 제4호 서식>에 기입한 후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와 같이 유가증권을 신 취급점에

송부한다.

2.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을 송부받은 신 취급점은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접수하고 이를 각 점간 증권수급장에 기입한 후 신 취급 공무원 계좌로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구 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 수령증 <별지 제4호 서식>을, 신 취급공무원에게 수탁증서(Ⅰ)를 각각 송부하여 신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 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에 첨부한다.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9조(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 취급점은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이하 “제출자”라 한다)로부터 「취급규칙」 제10조에 따른 유가증권을 첨부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건별장에 제출자의 인감을 받은 후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확인통지서(이하 “납입확인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1. 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권면종류, 권면액, 회기호, 번호 및 부속이표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다만, 번호기입에 있어서 증권 명칭, 회기호 등이 동일하고 이표가 없는 국채증권일 경우에는 끝번호만을 기입할 수 있으며 동일 끝번호별로 합산기입할 수 있다.
2. 「규칙」 제16조에 따른 부속이표의 청구권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권리자에 대한 권리증명서류와 인감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첨부 여부
3. 보증금으로 유가증권이 제출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대납가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 다만, 최종 거래일의 종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세를 대납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으로서 제출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첨부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인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제출자에게 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한 후 해당 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입확인보고서를 송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납입확인통지서 및 수입확인보고서에는 정부유가증권 접수정리부에 따라 건별로 수탁번호를 기입하고 그 번호를 납입서 및 납입인가서에 부기한다.

제10조(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①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른 유가증권을 첨부한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 수탁증서(이하 “수탁증서“(Ⅱ)“라 한

다)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에 해당 유가증권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된 유가증권 또는 「유실물법」에 따라 기탁하는 유가증권이라는 뜻이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취급공무원의 별도 계좌로 수입하고 수탁증서(Ⅱ) 건별장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압류 또는 유실증권 표시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탁증서(Ⅱ)에는 유가증권접수정리부에 따라 제출서 또는 내역서에 건별로 수탁번호를 부기한다.

제11조(증권의 환부) 취급점은 취급공무원 또는 제출자로부터 「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취급공무원의 환부지시 및 제출자의 영수표시를 한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입확인통지서상의 제출자 인영이 건별장상의 인감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환부절차를 이행한 후 유가증권을 교부한다. 다만, 제출자의 인영이 건별장 상의 인감과 다를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한다.

제12조(증권의 일부환부) 취급점은 취급공무원 또는 제출자로부터 「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와 같이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부환부청구서상의 제출자 인영이 건별장상의 인감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환부절차를 이행한 후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의 표시를 하여 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한다. 다만, 제출자의 인영이 건별장상의 인감과 다를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한다.

제13조(증명청구서에 따른 환부) 「취급규칙」 제33조에 따라 망실 또는 훼손된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대하여 발행한 증명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로서 해당 취급공무원이 이의 환부를 요한다고 기입 증인한 증명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부속이표의 교부) 취급점은 「취급규칙」 제14조에 따른 정부보관유가증권 이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표청구서상의 청구자의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건별장에 교부표시를 한 후 당해 이표를 교부한다. 다만, 청구자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다를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한다.

제15조(압류 또는 유실증권에 대한 처리) ① 취급점은 보관중에 있는 압류 또는 유실증권으로서 그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상환기일 도래통지서 또는 정부유가증권이자지급기일 도래통지서를 당해 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취급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까지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취급점은 환부서(정부보관유가증권 환부청구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로 같음한다)를 작성하여 환부절차를 이행한 후 해당 원리금을 가수금계정으로 수입하여 이를 해당 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통할점을 거쳐 본부에 보고한다.

③ 본부는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취급점에 통보한다.

제16조(보관전환) ① 취급점은 취급공무원 또는 제출자로부터 「규칙」 제22조에 따른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환부절차와 신취급공무원 계좌로의 수입절차를 이행한 후 신 취급공무원에게 수탁증서(Ⅱ)를 구 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보관전환확인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각각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 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이 타점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한다.

1. 구 취급점은 정부보관유가증권 명세장의 구 취급공무원 계좌로부터 환부절차를 이행하고 정부유가증권 송부서를 작성한 뒤 각 점간 증권수급장에 기입하고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와 함께 유가증권을 신 취급점에 송부한다.
2.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을 송부받은 신 취급점은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검수한 후 이를 각 점간 증권수급장에 기입하고 신 취급공무원 계좌로의 수입절차를 이행한 후 구 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 수령증을, 신 취급공무원에게 수탁증서(Ⅱ)를 교부한다.

제17조(보관금으로서의 대체를 위한 환부) ①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으로 「취급규칙」 제18조에 따른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환부절차를 이행한 후 유가증권을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관증서의 일부를 환부할 경우에는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 및 제출자의 동의서 이외에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표시를 하여 해당 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한다.

제18조(정부소유로 된 증권) ①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수탁증서(Ⅱ)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환부절차와 신 취급공무원 계좌로의 수입절차를 이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 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이 타점인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4장 계좌개설 및 명의변경

제19조(계좌개설) 취급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취급공무원의 임명통지를 받은 후 취급관서로부터 계좌개설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인감·명판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받고 계좌를 개설한다.

제20조(취급공무원의 교체) 취급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취급공무원의 교체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임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인감·명판신고서를 받고 전임 취급공무원의 인감·명판신고서는 폐기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한다.

제21조(취급관서명칭변경)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관서의 명칭 변경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계좌의 구 명칭에 괄호를 하고 신 명칭과 변경일자를 기재한다.

제22조(취급공무원의 인감, 명판 변경취급)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인감·명판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새로 인감·명판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받고 해당 관서계좌에 그 변경일자를 기재한다.

제23조(취급관서의 이전, 폐지) 취급점은 취급공무원로부터 해당 관서의 이전 또는 폐지통지와 같이 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이관절차를 실시한다.

제24조(계좌폐쇄) 취급점은 제23조에 따라 이관절차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동시에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 계좌폐쇄의 표시를 한 후 해당 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중 2통에 증명을 받는다. 임시 취급점으로서 수입증권 전부를 환부하여 해당 계좌를 폐쇄할 경우에도 같다.

제5장 증권의 수급 및 보관

제25조(증권의 수급) ① 증권을 수급할 경우에는 납입서, 기탁서 또는 수탁증서 납입확인통지서 등 관계증빙에 따라 현물을 대조 확인하고 해당 수급증빙에 수급확인 표시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한 증권과 그 부속이표는 이를 수입할 수 없다.

제26조(증권의 정리) 증권은 거래 건별로 증권명칭별, 회기호별, 권종별로 구분하여 100장씩 묶은 후 띠지의 상단과 하단에 일자와 취급자인을 각각 날인한다. 다만, 장수가 100장 미만인 경우에는 띠지의 앞면에 장수를 기입한 후 일자와 취급자인을 날인한다.

제27조(증권의 보관) ① 모든 증권은 거래 건별로 봉투 또는 일정한 용기에 넣어 책임자 및 취급자가 봉인한 후 표기<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증권을 2개 이상의 봉투 또는 용기에 분납할 경우에는 봉투 또는 용기에 제1항의 절차를 취하고 표기의 적당한 곳에 분납의 뜻을 표시한다.

③ 제26조의 취급자와 이 조의 취급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④ 증권을 넣은 봉투 또는 용기를 개봉할 때에는 책임자와 취급자가 입회한다.

제28조(시재검사) 취급점장은 정부유가증권 시재검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매월 2회 이상 시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실의 감사 시 실시하는 현물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재검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각 점간의 증권수급) ① 증권을 다른 취급점에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점은 정부유가증권 송부서를 작성하여 이에 증권을 첨부, 송부한 후 수입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 수령증을 받아 정부유가증권 송부서 원부에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증권 송부는 등기배달증명우편 또는 현송으로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절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사무 취급절차」를 준용한다.

제6장 장부

제31조(취급점 비치장부) ① 취급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다만,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처리는 전산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정부소유유가증권 명세장<장부 제1호 서식>
2. 유가증권 건별장<장부 제2호 서식>
3. 정부유가증권 접수정리부<장부 제3호 서식>
4. 각 점간 증권수급장<장부 제4호 서식>
5. 정부보관유가증권 명세장<장부 제5호 서식>

② 유가증권 건별장은 다음에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수입 매건별로 작성하되 2장 이상일 때에는 연속번호를 붙이고 그 현재액은 첫 장에 기입한다.
2. 건별장은 보관의 구분회계별 및 취급관서별로 수입 순으로 보관한다.
3. 증권 전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별장에 환부표시를 하고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월별로 건별장장수를 표시한 합계표를 첨부, 합철하여 보존한다.
4. 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건별장 해당란에 교부 표시를 한다.
5. 증권의 부속이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별장 해당란에 교부 표시를 한다.

③ 정부유가증권 접수정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정부소유와 보관별로 구분하고 정부소유 분은 회계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건마다 접수 순으로 접수일자, 수탁번호, 취급관서명, 제출자명, 증권의 중

류, 장수 및 권면금액을 기록하고 이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그 환부일자를 기록한다.

2. 제1호의 수탁번호는 접수 순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연도가 바뀔 때마다 갱신한다.

④ 각 점간 증권수급장에는 취급점 간의 증권 수급 시마다 정부유가증권 송부서 원부 또는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에 따라 취급관서명, 취급공무원명 및 이관 사유와 증권명칭, 권면종류, 장수 및 권면금액 등을 기입한다.

제32조(통할점 비치장부) 통할점은 정부유가증권 수급총괄장<장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 다만,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처리는 전산파일로 같음할 수 있다.

제33조(본부 비치장부)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다만,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처리는 전산파일로 같음할 수 있다.

1. 정부유가증권 총괄장<장부 제7호 서식>
2.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장<장부 제8호 서식>

제34조(장부의 보존)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장부는 해당 장부 마감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7장 계산보고

제35조(취급점의 월계대사표 작성 및 수급보고) ① 취급점은 매월 「취급규칙」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 월계대사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고 이에 월중수급증빙의 번호를 기재한 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첨부하여 다음달 7일까지 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중 2통에 증명을 받는다.

② 취급점은 제1항의 증명필대사표의 반송이 있을 때에는 증인한 취급공무원의 인감·명판을 대조·확인하고 그 중 1통은 이에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속 통할점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 개정 등으로 폐쇄된 관서가 보관하던 유가증권으로서 해당 관서 폐쇄 이전에 취급공무원이 납입자에게 환부조치를 하였으나 납입자가 환부를 청구하지 않아 잔액이 있어도 월계대사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한 취급점장의 날인으로 제1항의 취급공무원 증명을 같음할 수 있다. 환부조치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자로부터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통할점을 거쳐 본부에 보고한다.

④ 본부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취급점에 통보한다.

제36조(통합점의 월계대사표 증계 및 수급보고) 통합점은 관할대리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를 첨부한 월계대사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급명세서 및 대사표의 기재내용을 대사·확인한 후 이에 자점 취급분을 합산한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월계대사표와 같이 다음 달 25일까지 본부에 도착하도록 송부한다.

제37조(정부유가증권 출납계산서) 본부는 통합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를 첨부한 월계대사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급명세서 및 대사표의 기재내용을 대사·확인한 후 「취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출납계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제38조(연도마감) 정부유가증권 사무의 연도말 마감은 매 회계연도 말일자(정부 회계연도 말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취급점은 정부유가증권 명세장의 연도말 현재 잔액을 계산외로 표시하여 지급란에 기입한 다음 장부를 마감하고 신년도 장부에는 신년도 초일자로 전년도 말 현재 잔액(구 장부 계산외표시지급액)을 계산외로 표시하여 건별로 수입란에 옮겨 적은 후 마감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5일까지 소속 통합점에 제출한다. 마감보고서는 전년도 말일자 정부유가증권 수급보고표로 대용하며 일중수급액과 계산외 지급분을 구분 표시한다. 이 경우 잔액은 0이 되며 한편 동 계산외 지급이월액은 신년도 초일자 정부유가증권 수급보고표에 일중수급액과 구분계산외수입으로 표시한다.
2. 통합점은 관할 취급점으로부터 연도마감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구년도 취급구분은 구 장부에 신년도 취급분은 신 장부에 각각 기입하고 연도마감보고서가 전부 접수되면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구 장부를 마감하고 해당 마감잔액을 계산외로 표시하여 신년도 장부에 옮겨적은 후 정부유가증권 수급총괄장과 명세장에 따라 연도마감보고서를 1월 15일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3. 본부는 통합점으로부터 마감보고서가 접수되면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관계 장부를 마감한다.

제8장 증명 및 정정

제39조(수탁증서 망실 등에 대한 증명) 취급점은 「취급규칙」 제33조에 따른 증명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청구서에 증명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건별장에 기입한다.

제40조(현재액증명) 「취급규칙」 제31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청구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41조(오류정정) 취급점은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취급규칙」 제32조에 따른 정

부유가증권 기재사항 정정청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별장 및 증빙서류를 정정하고 정부유가증권 기재사항 정정확인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송부한다.

제9장 증빙서류

제42조(수급증빙) 취급점은 「취급규칙」 제34조에 따라 정부유가증권 수입(환부)합계표<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와 정부유가증권 수급총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3조(기타증빙) 제42조 이외의 기타증빙은 취급일자를 표시하고 책임자 및 취급자가 날인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존한다.

제44조(증빙의 보존) 제42조 및 제43조의 증빙은 취급한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0장 보칙

제45조(상위직급자의 거래승인)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담당자의 상위직급자가 미리 거래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정부유가증권 제출자 또는 취급공무원과의 수탁·환부 거래
2.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앞으로의 이관 거래
3. 정부유가증권 신·구 취급공무원 계좌 간의 보관전환 거래
4. 정부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앞으로의 부속이표 교부거래
5. 정부유가증권 관련 거래의 취소

부 칙 <1988. 2. 29.>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8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절차는 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요강은 폐지한다.
- ③ (경과규정) 이 절차 시행일 이전의 정부유가증권사무는 이 절차에 의하여 취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 10. 17.>

이 절차는 199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25.>

이 절차는 1994.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2.>

이 절차는 1995. 1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0.>

이 절차는 1996. 10.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29.>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3. 5. 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국고대리점 계약에 따라 정부유가 증권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절차 제4조 제1항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5. 3.>

이 절차는 200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전에 종전 절차에 따라 처리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때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 약인 또는 금융업무실장 인장이 찍힌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사무취급 약정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부유가증권사무 (취급·취급종료)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상환기일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이자지급기일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송부서원부
별지 제5호 서식	인감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증명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 보관전환확인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인감 · 명판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표기
별지 제10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시재검사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수급보고표
별지 제12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월계대사표 부표
별지 제13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수급명세서
별지 제14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현재액 증명청구서
별지 제15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기재사항 정정청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기재사항 정정필 통지서
별지 제17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수입합계표
별지 제18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환부합계표
별지 제19호 서식	정부유가증권 수급총계표